

1 북한의 농업/식품 관련법규

I. 북한내 법규

1. 농업법

농업법은 농업을 발전시키는데 있어 지켜야할 원칙적 문제를 전반적으로 포괄하고, 농업전문분야에 대해 규제적 작용을 하기 위한 농업부문의 기본법이다. 농업법은 전6장, 78조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농업법의 기본

제1장 농업법의 기본에서는 법의 사명과 농업이 인민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치, 농업발전에서 성취한 성과와 농업경영 형태, 농업생산과 관리 주체, 농업을 발전시키는데 제기되는 주요 원칙이 규정되어 있다. 우선, 농업법은 농업생산과 농업의 물질·기술적 토대 강화, 농업자원 보호와 농업생산물 관리에서의 제도 및 질서를 엄격히 세워 농업을 발전시키고, 사회주의 농촌경영체도를 강고히 하는데 공헌하는 것을 사명으로 규정하고 있다.

농업생산을 늘리고 물질·기술적 토대를 강화하며 농업자원 보호와 생산물 관리를 견고히 수행하는 것은 농업발전의 중요한 요구이다. 특히, 자연지리적 조건과 계절적 조건의 영향을 많이 받고 생명체를 다루며 넓은 지역에서 분산적으로 행해지는 농업생산의 특성상 제도와 질서를 세우는 문제는 현충 중요한 문제로 제기된다.

농업법은 농업생산의 이러한 특성에 맞게 스스로

의 사명을 올바르게 규정하고, 농업발전과 사회주의 농촌경영제도 강화를 위한 중요한 법적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원만히 수행할 수 있는 보증을 부여한다. 또한, 농업법은 농업이 차지하는 위치와, 지금까지 농업발전으로 이룩한 성과에 대해서 분명히 하고 있다.

법에 명기된 것처럼 농업은 인민경제 2대 부문중 하나이다. 농업생산을 늘리는 것이야말로 인민의 먹는 문제를 해결하고 공업원료를 원만히 보장할 수 있다. 인민경제 발전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위치의 중요성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정확한 농업정책을 실시하여 농업이 물질·기술적 토대를 강화하고 농업생산 수준을 높였으며 사회주의적 농업경영체도를 견고히 쌓았다.

농업법 제1장에서는 농업경영 형태와 농업생산 및 관리의 주체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경영형태와 생산담당자에 관한 문제는 사회제도의 본성과 그 계급적 성격에 관련된 문제이다.

농업법은 우리나라에서의 농업경영 형태를 국영경영과 협동경영으로 구성된 사회주의적 경영형태로 규정하고, 국영경영의 지도적 역할을 높이고 성숙한 조건과 가능성, 협동단체 성원의 자발적 의사에 근거해 협동경영을 서서히 국영경영으로 전환하는 것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농업법은 농업생산과 관리의 주체가 농업 근로자라고 규정하고, 이들의 의사와 요구, 창발성과 적극성을 앙양시키는 것에 관해서도 분명히 하고 있다. 우리나라 사회주의 농촌경

영 제도의 본성과 계급적 성격에 맞도록 농업의 경영형태와 농업생산 및 관리 담당자에 관해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농업법은 농업생산과 관리를 철저히 인민대중의 요구와 사회주의 제도의 본성적 요구에 맞게 행할 수 있는 확고한 법적 보증을 부여하고 있다.

농업법 제1장에는 이 밖에도 농업발전에서 제기되는 주요 원칙이 규정되어 있다. 농업을 다각적으로 발전시키고 주체농법을 철저히 구현하며, 농업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강화하고 농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일, 농업에 대한 국가의 지도를 바르게 하고 농업분야에서 국제적 교류와 협력을 발전시키는 일 등은 법에 규정된 농업발전의 주요 원칙이다. 농업법에 규정된 이러한 원칙은 당과 국가의 정책적 요구를 정확히 반영한 것으로, 농업발전과 사회주의 농촌경영 제도를 강고히 하는 중요한 법적 보증이 된다.

모든 농업부문의 활동가와 농업근로자, 전인민은 농업법의 요구를 정확히 파악하여 철저히 집행함으로써 강성대국 건설의 천하지대본인 농업생산을 늘리고 인민의 먹는 문제를 결정적으로 해결하는데 적극적으로 공헌해야 할 것이다.

〈제2장〉 농업생산

농업법 제2장 농업생산에서는 농업생산을 늘리는데 제기되는 원칙과 방도가 규정되어 있다. 농업생산은 곡물, 야채, 공예작물, 축산물, 과일, 전사 등의 생산을 보장하는 중요한 임무이다. 농업법은 국가 지도기관, 국영농목장, 협동농장, 해당기관, 기업소, 단체들이 농업생산 계획을 현실적으로 세우고 생산조직을 올바르게 이끄는 일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또, 곡물생산을 기본으로 하면서 기타 부문을 편성 배치하고 농업생산의 전문화 수준을 높이는 문제와, 종자생산 및 공급, 이를 이용함에 있어 지켜야 할 원칙과 질서가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법적 규정에 의해 농업생산의 배치와 전문화, 종자생산 및 관리 이용을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행할 수 있는 보증이 주어졌던 것이다.

농업법은 또 농업생산의 부문별 생산을 늘리기 위한 원칙과 방도를 규정하고 있다. 농업에서 기본인 곡물생산의 파종면적을 늘리고 비배관리를 확실하게 하며, 경지 ha당 수확고를 늘려 곡물생산 계획을 어긋남 없이 수행하는 문제를 비롯, 야채, 공예작물의 생산을 탄탄히 하고 다모작 방법을 도입하는 문제, 축산물과 과일, 누에고치 생산을 늘리는 문제 등은 법에 규정된 농업생산의 부문별 과제이다.

제2장에서는 이와 함께 농업을 과학기술적으로 실행하며 농업생산을 늘리는데 제기되는 문제도 규정하고 있다. 적기적작의 원칙을 지키고 용수와 기계, 비료와 농약을 과학적으로 이용하며 그 효과를 높이고 병해충 피해와 자연기후적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는 일은 농업생산을 늘리는데 중요한 요구이다. 농업법은 이러한 요구를 반영하여 농업을 과학기술적으로 행하기 위한 문제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적 규정은 농업생산의 모든 문제를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곡물을 비롯한 농업생산을 늘리는데 중요한 법적 보증이 된다.

〈제3장〉 농업의 물질·기술적 토대

농업법 제3장에서는 농업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강화하는데 제기되는 문제가 규정되어 있다. 농업의 물질적 토대는 농업의 자립성을 강화하고 농업생산을 높은 수준으로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귀중한 토대이다. 법에서는 토지의 관리와 개간, 이용에 있어 제기되는 문제, 관개수리시설 및 설비의 관리와 이용, 농업부문에 대한 전력공급 문제, 농업설비와 농기구, 부속품의 생산보장과 비료, 농약, 제초제의 생산 공급에 관한 문제, 가축, 종자, 사료, 수의약품, 연료의 생산 및 보장문제, 농업생산과 관련한 건설 및 영농기계 보장문제, 농업생산과 관련한 건설 및 영농기계 보장문제, 농업 과학기술 발전과 관련한 문제 등 농업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강화하기 위한 문제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농업의 기본 생산수단인 토지의 관리와 개간, 이용에 관한 문제이다. 제3장에서는 국영농목장과 협동농장, 해당기관, 기업소, 단체가

농지를 정기적으로 조사, 장악하고 간석지 개간과 신지 개척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쳐 보다 많은 농지를 획득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토양 분석을 주기적으로 하고 계획적으로 개량하며, 유기질 비료를 많이 생산해 지력을 높이고 토지정리와 토지건설을 규정대로 하는 문제에 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토지의 관리와 개간, 이용에 관한 이러한 법적 규정은 농업의 기본 생산수단인 토지의 관리를 계획적이고 과학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농업생산을 늘리는 일에 적극적으로 공헌할 수 있는 보증이 된다.

모든 농업부문의 활동가와 근로자는 법의 요구대로 농업생산을 결정적으로 늘리고 농업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한층 강화하여 강성대국 건설에 공헌해야 한다.

〈제4장〉 농업자원의 보호

농업법 제4장 농업자원의 보호에서는 농업자원 보호에서 제기되는 문제가 규정되어 있다. 농업자원을 보호하는 일은 농업을 안전하게 행하는데 중요한 문제이다. 여러 가지 자연재해와 환경오염, 기타 원인에 의한 피해로부터 농업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철저히 세우는 것이야말로 농업생산의 안전성을 보장하고, 생산을 끊임없이 늘릴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농업법은 농업자원을 보호하는 일을 농업생산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는 중요 방도로 규정하고, 농업 지도기관과 국토환경보호 지도기관, 국영농목장, 협동농장, 해당기관, 기업소, 단체가 자연피해로부터 농업자원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수도 공사, 하천정리, 사방야제공사, 제방공사와 사방림, 방풍림, 수원함양림 조성, 계단식밭 건설을 시행하고 농업 지원보호시설을 일상적으로 보수정리하는 문제를 분명히 하고 있다. 또한, 농지는 농업생산에 이용하며 방치하거나 남용하지 않고, 농업 자원보호를 위해 필요한 지역에 보호구역이나 격리구역을 설정해 양호한 토종과 농업생산에 이로운 생물의 생육, 번식조건을 제공하며, 불리한 기후에 의한 손실을 방지하도록 기상예보 통보체계를 세우는 일에 관해

서 분명히 하고 있다. 이러한 법적 규정에 의해 농업자원 보호사업의 성과를 강고히 하기 위한 보증이 주어지고 있다.

〈제5장〉 농업생산물의 관리

농업법 제5장 농업생산물의 관리에서는 농업생산물의 장악과 보관, 처리에 있어 제기되는 문제가 규정되어 있다. 농업생산물의 관리를 분명히 하는 일은 맘홀려 수확한 곡물 및 농업생산물을 낭비하지 않고 인민생활과 국가의 경제발전에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더없이 중요한 문제이다. 농업생산물을 생물학적 특성에 맞게 관리하고 이러한 사업에서 계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우는 것이야말로 모든 농업생산물이 조금의 손실도 없이 국가와 통일적인 계획 아래 인민생활과 경제건설에 적극적으로 공헌토록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요구로부터 제5장에서는 농업생산물의 관리는 농업생산물을 장악, 보관하고 처리하는 사업이고, 이러한 관리는 생물학적 특성에 맞게 행해지지 않으면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농업생산물 생산 상황을 장악하고 수확, 탈곡, 선별, 운반, 가공, 처리 등을 청결히 하여 낭비와 부패·변질, 불량품을 없애고 포장을 정해진 대로 행하여 기술적 조건과 안전조건이 갖추어진 시설에 보관하는 일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또한, 농업생산물의 처리를 국가계획과 계약, 그 외 정해진 대로 행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분명히 하고 있다. 이러한 법적 규정은 농업생산물 처리를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보증이 된다.

농업법 제5장에서는 이외에도 농업생산물의 검사와 판매, 수출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규정하고 있다.

〈제6장〉 농업에 대한 지도통제

농업법 제6장 농업에 대한 지도통제에서는 농업에 대한 지도와 감독통제에 있어 제기되는 문제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농업에 대한 지도에서 중요한 것은 농업지도 체계를 바르게 세워 농업생산 전공정을 장악하고 과학기술적으로 지도하며, 농업을 기업적 방법으로 관리 운영하는 일이다. 농업관리운영에 있어

작업반 우대제와 분조관리제를 바르게 실시하고 사회주의 분배원칙에 근거해 분배를 실시하는 것도 제 6장에서 규정된 중요한 내용이다.

농업법에는 이외에도 농업에 대한 감독통제에 있어 제기되는 문제가 규정되어 있다. 우리들은 농업부문의 기본법이 농업법의 내용과 법적 요구를 분명히 파악하고 철저히 집행함으로써 농업을 한층 발전시키고, 사회주의 농촌경영 체도를 보다 강고히 해 강성대국 건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2. 양어법(養魚法)

양어법의 채택은 양어사업에서 이룩한 성과를 법적으로 공고히 하고 현실발전 요구에 맞게 양어사업을 더욱 대대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데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양어법은 전6장, 49조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양어법의 기본

제1장 양어법의 기본에서는 법의 사명과, 양어사업에서 전지해야할 원칙적 요구가 규정되어 있다. 법에 규정된 양어법의 사명은 양어수역의 관리와 수산물 자원의 조성·생산, 자연보호 제도 및 질서를 엄격히 세워 양어사업을 발전시키고 인민생활 향상에 공헌하는 것이다. 양어법의 사명이 양어사업의 특성과 목적에 맞게 정확히 규정됨으로써 양어법이 양어 부문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양어장을 대대적으로 건설하며 양어 수역을 효과적으로 이용하고 보다 많은 수산물을 생산하는 일에 관해 당과 국가의 양어정책을 철저히 관철하는 수단으로 적극적으로 작용할 수 있게 되었다.

제1장에서는 또, 양어사업에서 수산물 자원 조성을 확고하게 우선시하여 인민 수요에 맞게 수산물 생산을 높은 수준으로 정상화하고, 인민들에게 수산물 자원을 보호하는 일에 관한 교육과 과학지식 보급 사업을 강화하는 것을 양어사업 발전에서 전지해야 할 원칙적 요구로 규정하고 있다. 동시에 양어사업을 발전시키는데 제기되는 과학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고, 양어부문의 능력있는 기술인력의 장래성을

보고 육성하는 일, 그리고 양어부문에서 외국 및 국제 기구와의 교류와 협력을 발전시키는 일에 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적 규정은 양어사업을 발전시켜 인민의 수산물 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키고, 수산물 자원의 보호와 양어 과학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는 법적 보증이 된다.

〈제2장〉 양어수역의 관리

양어법 제2장에서는 양어수역에 대한 적지(適地) 조사와, 분담, 양어수역 토지 이용에 있어 제기되는 질서가 규정되어 있다. 양어사업은 수산물의 생태조건을 원만히 보장할 수 있는 수역을 내놓고 생각할 수 없다. 양어수역 관리에서 중요한 사항은 지역별, 수역별로 양어 적지조사를 과학적으로 하고 관리분담을 정확히 하며 양어장 건설과 양어수역 토지 이용을 견실히 하는 것이다. 양어법 제2장에서는 이러한 요구에 따라 양어수역 관리에서 제기되는 질서를 규정함으로써 양어사업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도록 보증하고 있다.

〈제3장〉 수산물 자원의 조성

양어법 제3장에서는 수산물 자원의 조성에 있어 제기되는 절차와 질서가 규정되어 있다. 수산물 자원의 조성은 양어사업의 선행 공정이며 수산물 생산을 증대시키기 위한 선결 조건이다. 양어법은 국가 계획기관이 수산물 자원의 조성 계획을 정확히 세우고, 중앙양어지도기관과 양어과학연구기관은 수산물의 원종을 보존하여 나라의 기후 풍토에 맞는 생산성 높은 수산물 품종을 연구개발하는 일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다.

이외에도 양어법은 치어의 생산을 늘리고 생존율을 높이며, 양어수역을 어류의 번식에 유리한 조건으로 정리하고 사료의 생산을 확실히 보장하는 일을 비롯하여 수산물 자원을 조성하는데 제기되는 문제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적 규정에 의해 수산물 자원을 과학적으로 조성하여 수산물 생산을 증대시

킬 수 있는 법적 보증이 갖추어졌다.

모든 활동가와 노동자들은 양어법의 요구대로 양어수역 관리와 수산물 자원의 조성에 있어 제정된 질서를 철저히 지키고, 조국의 하천과 호수, 저수지 및 양어장에 어선이 넘쳐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제4장〉 수산물 생산

양어법 제4장에서는 수산물의 생산 및 보관, 공급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원칙과 절차, 방법이 규정되어 있다. 수산물 생산은 인민에게 더 많은 수산물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일정한 원칙을 지켜야 한다.

양어법은, 수산물의 적지적종(適地適種) 원칙으로, 일체적이고 집약적인 양식과, 단위면적당 생산량을 늘리며 수역면적당 수산물의 종류별 자연조성량과 생산가능량을 정확히 계산해 수산물 생산계획을 수립, 실행하는 일을 수산물 생산에서 지켜야 하는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 의해 수산물의 생활습성 및 지대적 특성에 따라 수산물 종류를 선택하고 양어장 이용률을 최대한 높여 단위면적당 생산량을 늘릴 수 있는 보증이 갖추어졌다.

양어법은 또한 양어수역에서의 수산물 생산은 양어기업소 및 수산물 자원을 조성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가 행할 수 있다는 것과, 수산물 생산 상황을 정확히 등록하고 수산물 생산설비 및 생산방법을 현대화, 과학화하는 일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다. 동시에, 필요한 시설 및 조건을 갖추고 획득한 수산물을 변질되지 않게 보관하며 적시에 공급하는 것에 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수산물 생산기관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고, 수산물 생산을 과학적이고 장래성 있게 행하여 인민들에게 신선한 수산물을 공급할 수 있는 중요한 법적 보증이 된다.

〈제5장〉 수산물 자원의 보호

양어법 제5장에는 수산물 자원을 보호하는데 기관, 기업소, 단체 및 공민이 지켜야 할 의무가 규정되어 있다. 수산물 자원을 보호하는 일은 양어사업에서 제기되는 필수적 요구이다. 양어장을 많이 건

설하고 수산물 자원을 조성했다고 해도 보호사업을 확실히 하지 않으면 당연한 성과를 얻을 수 없다.

이러한 요구에서 양어법에선 수산물 자원의 보호시기와 보호해야 할 수산물의 종류, 어획 도구 및 방법 등을 확실히 정하고, 매년 수산물자원 실태조사를 철저히 행하며 양어수역에서 필요한 차단시설과 어로를 만드는 일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기관, 기업소, 단체 및 공민이 양어수역을 오염시키는 물질을 버리지 않고, 낚시를 할 경우 정해진 질서를 지키는 일에 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제5장에서 규정된 내용은 양어사업의 요구에 따라 수산물 자원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인민에게 보다 많은 수산물을 생산·공급할 수 있도록 하여 양어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중요한 법적 보증이 된다.

〈제6장〉 양어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양어법 제6장에서는 양어사업에 대한 지도 및 감독통제와 관련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양어사업에 대한 지도체계를 확실히 세워 감독통제를 강화하는 일이다. 중앙 양어지도기관은 전국의 양어사업을 정확히 장악하고 지도해야 하며, 해당기관은 어류 질병 치료·예방과 미생물 번식, 필요 노력, 설비, 자재, 자금을 확실히 보장해야 한다. 양어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와 관련한 법적 규정에 의해 국가의 양어정책을 보다 정확히 집행할 수 있는 중요한 법적 보증이 갖추어졌다.

모든 활동가와 근로자, 공민은 양어법에 규정된 법적 요구를 확실히 인식하고 철저히 집행해 양어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야 할 것이다.

3. 산업재산권법

이 글에서는 향후 남북 경제교류에서 발생할 소지가 있는 북한의 산업재산권 관련사안 중 특허권과 상표권을 중심으로 다루고자 한다.

3.1 개관

북한의 산업재산권 관련법들은 1968년 제정되었으며 '발명·기술혁신법(창의고안에 관한 법률)'과

'상표·의장법(공업도안에 관한 규정)'으로 나뉜다. 전자는 우리의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과 비슷하고, 후자는 우리의 '상표법 및 의장법'과 대체로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관련업무는 내각(구정무원) 산하의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소속의 발명위원회가 총괄하고 있고, 그 아래 발명심의회를 두고 실질적인 산업재산권 업무인 발명, 상표, 공업도안의 접수, 출원, 등록업무 등을 관장하게 하고 있다(발명·기술혁신법 제3조, 상표·의장법 제3조). 단, 기술개발의 경우는 소속기관별로 관장한다. 또한, 북한은 대내적인 법정비와 아울러 대외적으로 세계지식 재산기구(WIPO), 파리협약(PARIS CONVENTION), 특허협력조약(PCT) 등 산업 재산권 보호와 관련한 국제조약에 가입해 외국기업의 산업재산권 보호를 보장하고 있다. 산업재산권 관련한 남북한의 국제기구 가입은 아래와 같다.

〈표 3-1〉 국제조약 가입현황

조 약	가입일자	
	남 한	북 한
WIPO	1979.3.1	1974.8.17
파리협약	1980.5.4	1980.6.10
PCT	1984.8.10	1980.6.10
상표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	-	1980.6.10
의장의 국제기약에 관한 헤이그협정	-	1992.5.27

3.2 북한의 특허제도

〈개요 및 성격〉

북한의 특허제도는 발명·기술혁신법과 그 시행규칙에 의하여 규율되고, 신속한 심사와 등록을 통한 효율적 기술의 실시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특허관련 법률적용의 범위는 북한의 기관, 기업, 사회협동단체와 국민뿐 아니라 해외동포, 외국의 기관·기업·사회협동체 및 외국민에게도 적용된다(발명·기술혁신법 시행규칙 제2조). 북한의 특허관련 규정은 발명과 기술혁신으로 구분된다. 그리고 발명자의 출원

방식에 따라 발명자증과 특허가 발급되고, 기술혁신에 대해서는 기술혁신증이 발급된다(동법 시행규칙 제8조). 기존의 관련법에서는 특허출원의 경우 외국인에 한해서만 자격을 주었으나 1986년 개정법에서 내국인에게도 특허출원을 제도적으로 허용했다. 그러나 이후로도 내국인이 특허출원을 한 경우가 한건도 없었는데, 이는 특허권을 행사할 만한 공개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북한의 경제체제와 특정기술의 사회적소유를 경계하는 북한당국의 정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듯하다. 한편, 이러한 제한이 없는 발명자증을 발급받으면 당국으로부터 발명에 대한 금전적 보상과 개인적 특혜 등을 받을 수 있으므로 내국인은 당연히 발명자증을 선호하고 있다. 반면, 외국인의 경우는 발명에 대한 권리보호가 주목적이므로 발명출원은 대부분 특허로 하고 있다. 권리적 측면에서 볼 때 특허에는 배타적 사용권리가 주어지지만 발명자증에는 배타권 대신 인격권만 인정되고 있다. 즉, 특허는 발명자가 타인이 자기의 발명권리가 침해되는 것을 막아주는 기능을 하고, 발명내용을 통하여 발명자가 이익을 취하도록 보장해 주는 제도적 장치이다. 그러나, 발명자증은 발명에 대한 개인적 보상과 명예를 인정해주는 제도적 장치이지 발명에 대한 개인적 권리보호를 담보하지는 않는다. 특허에는 발명위원회에 출원한 날로부터 15년간의 권리 존속 기간이 있지만(동법 제11조), 발명의 실시권이 국가에 귀속되는 발명자증에는 개인적인 권리의 존속기간이나 양도의 권리가 없다(동법 시행규칙 제10조).

〈특허 출원 대상〉

발명은 기계나 설비의 형태, 장치, 합금제품 및 기술공정이나 생산방법에 관한 것을 대상으로 하고, 기술혁신의 기계설비나 시스템의 일부분에 대한 개선제나 강화 및 기술공정이나 생산방법에 관한 제안이 포함된다. 즉, 특허 출원의 대상은 기계류의 발명이나 과학적 발견 등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물이어야 한다. 따라서 다음에 열거하는 것들은 발명과 기술혁신에 해당하지 않는다(동법 시행규칙 제6조, 시행규칙 제7조).

- 사회과학이론 및 순수과학이론 이론
- 산업미술과 의장
- 계산도표, 표장, 기호, 컴퓨터 프로그램
- 시설물 및 건축물의 디자인
- 경제조직 및 회사경영의 방법

또 발명에 해당하는 것중에서도 다음과 같은 대상에는 특허를 부여하지 않는다(동법 제13조).

- 화학적으로 얻어지는 물질
- 의약품 및 식품
- 원자핵 반응에 의해 제조되는 물질 및 원자력기술
- 신변중 식물과 동물육종 및 생물공학적 방법에 의한 발명

그의 특허의 요건으로 선행기술과 비교하여 발명 내용의 신규성, 진보성, 기술적·경제적 효과성이 있어야 한다. (동법 시행규칙 제4조)

〈특허출원 및 심사절차〉

우리의 특허청에 해당하는 발명심의회는 출원문건을 접수한 후 신청인에게 신청접수통지서를 발급해주고 발명공보에 게재한다. 발명의 단일성이 유지되도록 매발명마다 특허출원을 해야하고 하나의 신청에 두개 이상의 발명이 포함되어서는 안된다. 심사는 출원일로부터 15개월 이내에 마쳐야 하고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동법 제22조). 선출원주의를 취하는 우리의 경우 출원문건에 이상이 생겨 보정지시를 받아도 큰 문제가 없다. 그러나 북한은 출원 서류에 문제가 생겨 보정지시를 받을 경우 보정된 날짜만큼 출원일이 순연되므로 이점에 대해 주의를 해야한다. 심사결과 출원을 거절해야 할 경우는 이유를 명시한 부결통지서를 출원인에게 보낸다. 이에 불복하는 신청인은 3개월 이내에 신소청원(불복항고)을 하여야 한다. 등록 결정된 발명은 정기적으로 발명되는 발명공보에 게재된다. 발명공보 내용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3개월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동법 제23조). 외국인은 반드시 평양발명·특허상표 대리부를 통해 출원해야 한다(동법 제16조, 동법 시행규칙 20조). 특허를 직접

출원하거나 특허청약(PCT)에 의거 출원한 뒤 북한 내의 단계와 절차를 밟아야 할 외국인도 위대리부를 통한 발명 심의위원회에서 모든 공식절차를 거쳐야 한다.

3.3 북한의 상표제도

〈개요 및 성격〉

북한 상표법인 "상표·의장법"은 제1조에서 상표·봉사표시·공업도안·본래명칭 등에 대한 권리보호와 상품과 봉사의 질에 대한 보장을 명문화했다. 이를 통해 국내외 시장에서의 상품기업으로 명시되어 있고 여기에는 일반개인도 포함된다(상표·의장법 제2조). 상표, 서비스표, 공업도안, 본래명칭 등에 관한 모든 행위의 지시와 감독은 발명위원회가 맡는다(동법 제3조). 그리고 상표권자는 상표권에 대해 배타권을 행사할 수 있고, 상표권의 권리 존속 기간은 출원일로부터 10년간이며 권리기간 만료후 갱신이 가능하다(동법 제21조). 북한에서의 상표란 '한기관·기업소의 상품을 다른 기관의 그것과 구별하기 위한 표시'(동법 제4조)를, 봉사표시란 '한기관·기업소의 봉사를 다른 기관의 그것과 구별하기 위한 표시'를 의미한다(동법 제5조). 상표에는 품명, 규격, 치수, 용량, 등급, 용도, 가격, 생산날짜, 검사번호 등을 명기한다. 상표와 봉사표시는 글자, 그림, 조각, 혹은 이들과의 결합으로 이루어지고, 추가로 이들과 색깔과의 결합으로 나타낼 수도 있다(동법 제6조). 반면, 우리 상표법상의 상표의 개념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호, 문자, 도형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이라고 정의하는데 여기서는 북한과 달리 색채상표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상표출원 대상〉

위에서 정의된 상표의 개념에 부합하는 모든 것이 상표출원의 대상이 된다. 이에 근거해서 북한의 조직과 기업은 모두 자기의 상품과 서비스에 대해 하나의 상표를 인정받을 수 있고, 상이한 상표와 서비

스에 대한 상이한 표장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아래의 사항에 해당될 경우는 상표로 등록될 수 없다(동법 제7조).

- 정해진 상표가 이미 널리 사용되는 경우
- 다른 기관이나 기업소에 의해 이미 등록된 상표와 같거나 별반 차이가 없는 경우
- 세계적으로 알려진 경우로 북한에 이미 알려진 경우
- 국가 혹은 정부기구의 상징과 표시, 깃발, 국장, 국호 및 그 약어로 표시된 경우로 관계기관의 승인이 없는 경우
- 사회주의법, 질서, 도덕, 관습과 대중의 이해관계에 맞지 않는 것
- 국제조약의 규정과 모순되는 것

위 사항에는 대부분의 국가가 인정하는 절대적 부등록 사유에 해당하는 보통명칭, 관용표장, 성질표시, 지리적 명칭, 흔한 성명, 간단한 표장 등에 대한 언급이 빠진 점이 큰 특징이다.

〈상표출원 및 심사〉

특허에서와 같이 관할기구는 발명심의소이고 출원 대상에는 내·외국인의 제한이 없다. 필요한 구비서류에는 상표등록 신청서, 신청자의 법적권리증명서, 상표와 그 설명서 및 기타서류가 필요하고, 절차와 방식은 별도규정으로 정한다(동법 제12). 선출원주의를 따르고, 한 개의 상표는 한 종류의 상품만 지정하여 출원하는 1상표 1출원주의를 따른다(상표·의장법 제17조). 신청자의 출원요건 미비로 발명심의소로부터 보정명령을 받을 경우 3개월내에 보정한 후 재신청이 가능하다(동법 제16조). 반면, 신청문건이 제대로 갖추어진 경우는 6개월 이내에 심의등록을 하고 상표등록증을 신청권자에게 발급하며 '조선상표'라고 공보에 게재한다(동법 제18조). 신청자는 부결통지를 받은 경우에 2개월 이내에 발명심의소, 발명위원회, 사법기관 등에 신소청원(항고)할 수 있다(동법 제29조). 외국인의 경우는 반드시 평양발명·특허상표 대리부를 통해 등록신청을 해야한다(동법 제51조). 필요서류에는 위임장, 본국출원

또는 등록원부, 법인등기부 등본이 있다. 그리고 사용언어는 조선어가 기본이고, 그외에 러시아어·영어·프랑스어가 가능한 언어이다(동법 제11조). 외국인 신청자는 자국 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자국 내에서 발행한 우선권 사본과 함께 북한에 출원신청할 경우 북한에서의 우선권 주장이 가능하다(상표·의장법 제14조).

1.3.4 남한기업의 대북한 산업재산권 출원 현황

남북한 모두 WIPO, 파리협약, 그리고 특허협약(PCT) 가입국이므로 "내국민 대우원칙"에 의거 상호 출원 및 등록 가능성은 보장되어 있다. 그러나 체제 인정문제 등 정치적인 이유로 남한기업 및 주민의 직접적인 출원서 접수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실정에서 현재까지 남한기업의 산업재산권 관련한 직접 출원은 전무한 상태이다. 이에 따라, 국내기업은 중국, 홍콩 등 제3국을 통해 제3국인 명의로 상표출원만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2000년 5월 현재 20여건의 상표출원이 되어있는 상태이다. 일찍부터 북한은 외국기업에는 산업재산권에 대한 전체적인 출원의 문호를 개방했지만 우리 기업에는 95년을 전후해 상표권에 한해서 제3국을 통한 출원만을 허용하고 있다. 특허권의 경우는 기술적인 표준과 국가기술의 보호 등 민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남한 기업의 북한내 출원등록이 없는 상태로 파악되고 있다. 반면, 상표의 경우는 당장 북한 경제나 체제에 영향이 적은 탓인지 출원등록이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다. 남한기업의 북한내 상표출원 시도와 그에 따른 특징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식료품이나 소비재 상품 중심의 출원이 주를 이루고 있다. 제과업, 제당업, 생활용품업, 백화점업 등과 관련된 업종에서 상표출원을 시도하고 있거나 준비중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들 업체는 업종 성격상 제품과 서비스의 차별화 정도가 약하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상표 선점과 이를 통한 상표인지도 제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다. 특히, 동일한 상표명의 제품을 생산중인 업체들간의

북한내 상표출원 경쟁은 더욱 치열할 수 밖에 없고, 이에 대한 북한측의 출원심사에 따라 국내 업체간의 분쟁의 소지도 생길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이들 기업들은 공통적으로 북한을 향후 자사 상품의 판매 시장이자 동북아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거점생산기지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서는 자사상표의 북한내 선점등록을 통한 미래 가치의 확보가 매우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다. 만약 자사상표에 대한 보호장치를 마련치 못할 경우 제3자에 의한 상표전용 및 선점시도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 각 업체는 주의하고 있다. 예를 들어, 러시아나 중국의 변방에서 북한내로 자사 상표를 부착한 가공상품이 반입되는데, 이에 대한 보호장치로서도 상표등록은 중요하다.

셋째, 남한기업 상표의 출원등록에 대한 북한의 일관된 원칙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자국내에 몇몇 특정대리소를 두고 외국상표의 출원등록을 관리하는데, 남한 기업의 상표에 대해서는 상당히 자의적 판단에 따라 출원 등록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업체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상표 출원 등록이 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북한의 상표등록 결정 기준을 파악하기가 어렵다고 한다. 설정, 상표등록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바로 상표보호에 대한 완전한 효력이 발생하지는 않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모 식품회사의 유명 상표(수해지원으로 북한내에서도 인지도가 있는 편임)가 출원과정에서 별 설명없이 출원 거부된 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남한내에서나 국제적으로 높은 상표인지도가 출원등록을 결정하는데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다만, 합영기업의 형태로 북한에 진출한 기업이나 진출예정인 기업의 상표출원은 비교적 용이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북한측에 당장의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주는 기업에 상표출원 관련 혜택도 주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때, 상표 출원의 형식상 주체는 합영회사의 북한측 당사자가 된다.

넷째, 출원과정에서 대부분의 기업은 제3국의 법률대리인을 통해 북한측 대리소와 접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중국이나 홍콩의 대리인을 이용하고 있고, 출원에서 등록까지 소요시간은 상당히 유동적 이어서 1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리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비용은 편차가 있지만 국내 변리사비용과 외국의 중개변리사 비용을 합쳐 약 80~150만원선으로 조사되었다.

3.5 향후 전망

독일의 경우 통독 20년전부터 동·서독간의 관련 법령에 대한 정보를 교류하여 통일후 큰 혼란 없이 산업재산권 관련한 제도통합을 이루었다. 우리도 남북간의 경제교류 확대에 따라 산업재산권 관련한 제도 통합을 이루었다. 우리도 남북간의 경제교류 확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산권 관련 분쟁과 문제점을 막기 위한 사전 준비가 있어야 한다. 이에 대한 선결과제로 실질적인 상호출원 인정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완비되어야 한다. 이 문제에 대해 이미 92년의 '교류협력분야 부속합의서'의 산업재산권 보호근거조항("남과 북은 쌍방이 합의하여 정한데 따른 특허권 상표권 등 상대측 과학기술상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한다")을 마련했다. 그러나 이후 관련사항에 대한 특별한 협의와 진전이 없다가 금년 6월 정상회담에서 산업재산권 보호장치에 대한 언급이 있어서 관련 논의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산업재산권은 자본주의 체제에서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장치적 성격이 강한데, 이러한 점이 향후 논의과정에서 북한으로서는 체제특성상 쉽게 수용하기 힘든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이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산업재산권에 대한 북한의 이해를 구하며 동시에 우리 기업의 산업재산권도 보호하는 방향으로 향후 논의가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 하겠다.

II. 남북교역관련 법규

1. 남북교역 물품 통관규정

제정 1994. 2. 5 관세청고시 제94-861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의거 남북 교역물품 통관에 따른 처리지침을 정하여 남북물자 교류시 통관업무의 원활과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반입물품"이라 함은 북한에서 직접 남한으로 운송(단순히 제3국을 경유하는 물품의 이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되어 반입되는 물품을 말한다.
2. "반출물품"이라 함은 남한에서 직접 북한으로 운송(단순히 제3국을 경유하는 물품의 이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되어 반출되는 물품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다음 물품에 관하여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출입 승인을 받은 물품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받지 아니한 반출입 물품으로서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50조 제1항 대외 무역법 제9조 제1항 단서, 동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입 승인 면제 요건에 부합되는 물품, 다만 대외 무역관리 규정 별표 3-1 제1호 가목, 나목, 다목 및 별표 3-2 제1호 가목, 나목, 다목에 규정된 휴대품 및 이사물품은 제외된다.

제2장 남북교역물품의 통관

제4조 (물품의 장치)

① 북한으로부터 반입된 물품은 관세법 제66조

의 규정에 의한 보세구역이나 통관장 등 지정된 장치 장소에 장치하여야 한다.

- ② 북한으로 반출할 물품은 당해물품의 제조공장 등 세관검사를 받고자 하는 장소에 장치해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효율적인 검사를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출통관 사무 처리규정 제4-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해야 한다.

제5조 (반입절차)

- ① 북한에서 물품을 반입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통관 사무처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고(수입신고서 양식 사용)를 하고 그 면허를 받아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반입신고를 받은 세관장은 수입통관 사무처리규정 제3-2-1조에 의하여 규정에 불구하고 물품검사를 실시한다.

제6조 (관세)

- ① 원산지가 북한인 반입물품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7조 (내국세 등)

- ① 반입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및 교통세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1조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이를 징수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반입물품의 부가가치세는 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세관장이 이를 징수한다.

제8조 (물품가격의 결정)

- 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국세 등을 부과, 징수하는 경우 과세 표준에 사용되는 물품의 가격은 관세 평가시행세칙 등의 규정을 준용하여 결정한다.

- ㉔ 구상무역방식으로 반입하는 물품은 그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다른 조건이나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 제2방법 이하의 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가격을 결정한다.
- ㉕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가격을 제6방법에 의하여 결정하는 경우에는 금액으로 표시된 당해 반입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결정할 수 있다.

제9조 (반출 및 환급절차)

- ① 북한으로 물품을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수출통관 사무처리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고(수출신고서 양식 사용)를 하고 그 편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북한으로 반출하는 물품중 전략물자 수출입 공고상의 전략물자에 해당하는 물품 및 이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전략물자 수출입통관 요령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점 심사하고 물품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반출물품에 대하여는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등을 환급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반출입 승인)을 받은 대북한 위탁가공 반출물품(반출입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제조·가공한 후 재반입 할 것을 전제로 반출한 물품 및 제3국으로 수출할 물품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관세등을 환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북한 위탁가공 물품을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대외무역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반출승인) 또는 (수출승인)을 받아 북한에서 판매하거나 제3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당해 위탁가공을 위하여 반출할 물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 (구비조건의 확인)

남북교역물품중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법령 및 기타법령에 의하여 승인, 추천 또는 기타 조건의 구비를 요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법 제1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1조 (남북교역물품의 표시)

남북교역물품을 반출입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고무인을 반출입 신고서 상당 우측여백에 날인 표시하여야 한다.

제12조 (수출입승인 면제물품 통관사무처리 규정의 준용)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외무역법상 수출입승인 면제대상 반출입 물품의 통관은 수출입승인면제 물품 통관사무처리규정 내지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3장 북한으로부터 반입되는 물품의 원산지 확인

제12조 (수출입승인 면제물품 통관사무처리 규정의 준용)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외무역법상 수출입승인 면제 대상 반출입 물품의 통관은 수출입승인 면제 물품 통관사무처리규정 내지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13조 (원산지 확인)

- 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13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북한으로부터 물품을 반입하는 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반입신고서 당해 물품의 원산지증명서 등 관계자료를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반입신고시에 이를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반입물품의 면허전까지 제출하게 할 수 있다.

㉔ 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원산지증명서 등 관계자료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당해 증명서의 발행기관 및 관계기관에 이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1. 당해 증명서가 적법한 기관이 발급한 유효한 것인지의 여부에 의문이 있는 경우
2. 당해 증명서에 기재된 세부사항이 사실인지 여부

제14조 (원산지증명서의 제출면제)

①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산지 증명서의 제출을 면제한다.

1. 과세가격(종량세의 경우에는 이를 관세법 제9조의 규정에 준하여 산출한 가격)이 10만 원 이하인 물품
2. 우편물(관세법 제152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3. 개인에게 무상송부된 탁송품 및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및 교육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휴대품이나 발송품
4. 재반출 조건부 일시반입물품
5. 물품의 종류, 성질, 형상 또는 그 상표, 생산국명, 제조자 등에 의하여 원산지가 인정되는 물품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에서 정한 과세가격 기준은 동일한 송화인과 수화인간에 동일한 시점에서 동일한 방법에 의하여 여러개의 물품을 송부한 경우에는 그 물품의 과세가격을 합하여 산출한 가격으로 적용한다.

제15조 (원산지 확인에 있어 직접운송원칙)

① 반입물품의 원산지는 그 물품이 북한으로부터 직접 남한으로 운송반입된 물품에 한하여 당해물품의 원산지를 인정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이

제3국의 보세구역 등에서 환적 또는 일시장치 등이 이루어지고 이물 이외의 다른행위가 없었음이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이를 남한으로 직접 운송된 물품으로 본다.

1. 운송상의 이유로 제3국에서 환적 또는 일시장치가 이루어진 물품
2. 박람회, 전시회 기타 이에 준하는 행사에 전시하기 위하여 제3국으로 수출하였던 물품으로서 당해물품의 전시목적에 사용한 후 남한으로 반출한 물품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원산지증명서와 함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선하증권 사본(북한에서 경유국, 경유국에서 남한)
 2. 경유국의 세관 또는 권한있는 관공서 등에서 발급하는 증명서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③ 세관장은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원산지증명서의 수출대상국 및 선화증권의 운송경로와 실제 운송경로가 상이한 경우에는 반입물품이 북한에서 적출되었는지 여부를 반입물품 운송선택의 선장 확인 함해 일지 등에 의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제16조 (원산지증명서)

① 원산지증명서는 발송인, 수화인, 발행번호, 발행일자, 당해물품의 품명, 수량, 중량, 수송 수단, 산지, 수출대상국 등이 기재된 것 이어야 하며, 국제협약 또는 국제관례에 맞게 작성된 것 이어야 한다.

② 원산지증명서는 한글 또는 영어로 표기된 것 이어야 한다.

③ 원산지증명서는 "조선대외상품검사위원회", "조선무역은행" 등 북한에서 원산지 증명서의 발급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급한 것 이어야 한다.

제17조 (반입물품의 원산지 표시)

- ① 세관장은 북한으로부터 반입하는 물품(여행자 휴대품 등 수입승인면제품을 포함한다.) 중 원산지표시가 부착된 물품에 대하여는 통관시 원산지 표시가 부착된 상태로 통관을 허용한다. 다만, 포장물품 등에 부착 또는 인쇄된 선전문구 등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이를 사전에 제거한 후 통관을 허용한다.
 1. 관세법 제146조(수출입의 금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내용
 2. 북한 및 반국가단체와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 선전하는 내용
 3. 공산주의 이념이나 체제를 찬양, 선전하는 내용
 4.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인하거나 국권을 문란하게 하는 내용
 5. 기타 국민의 안보의식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내용
-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세청장이 통일원장관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 물품 및 그 부장 물품은 당해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 표시방법, 원산지 표시의 확인 등에 대하여는 원산지 관리세칙을 준용한다.

제4장 보 칙

제18조 (심리의뢰)

- 세관장은 반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심리의뢰 한다.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원산지를 속이거나 허위표시한 때
 2. 원산지증명서 등 관계자료를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위작성 또는 구비하여 제출한 때

제19조 (반출입 통계)

- ① 남북교역물품의 반출입에 대한 통계는 무역통계에 관한 기본지침에 불구하고 무역통계에 계산하지 아니한다.
- ② 남북교역물품의 반출입에 관한 통계작성은 별도로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0조 (보고)

- 세관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반출입실적(월별)
 2. 반입물품에 대한 통관보류, 반송, 심리의뢰(즉시)
 3. 기타 반출입물품 통관과정에서 발생한 특이사항

제21조 (준용규정)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세법 및 관세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1994. 2. 15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구비조건인 확인) 제10조에서 구비조건인 확인이라 함은 통일원장관이 승인서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 (폐지규정)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남북교역물품통관요령 (관세청예규 제137-0-00-219, '90. 9. 4)은 폐지한다.

<출처:북한의 외국인 관련 투자법규집, 통일원, 1997>

2. 남북교역물품 통관절차

2.1 무역법의 기본골격(제1장 내용)

남북경협사업에 대해 정치적 목적성을 배제한 경제적 논리에서 접근하겠다는 방침에 따라 최근 정부는 대북투자에 대한 규제를 풀고 기업인들의 북한방

문을 자유화하는 등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한 여러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조만간 구체적 시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신정부의 남북경협활성화 방침에 따라 북한과의 교역을 추진하려는 업체들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본고는 북한과의 교역에서 필수적으로 숙지해야 할 사항이지만 기존의 남북교역절차 해설문헌에는 단편적으로 설명되어 있어 간과하기 쉬운 사항인 남북교역물품의 남한 내 통관절차를 설명하고자 한다. 북한의 거래계약이 체결된 후 해당물품의 남북한 이동시 우선 '남북한 교역대상 반출 반입 승인절차에 대한 고시'에 의거 승인을 요하는 품목 및 사항의 경우 통일부장관 승인을 득한 후 세관통관절차를 거쳐 남북한간에 물자 교류에 개시된다('남북한 교역대상물품 및 반출·반입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에 적시되지 않은 품목은 포괄승인 품목으로 분류되어 별도의 승인절차를 거치지 않음). 남북한 교역물품의 통관절차는 대부분 일반수출입물품 통관절차를 준용하여 처리하고 있으나 남북교류협력관계법상 별도의 남북교역물품 통관규정을 두고 있어 남북경협사업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동 규정에 대한 숙지가 필요하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통관절차에 따라 남북교역물품 통관규정을 체계적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참고로, 남북한간의 물자교류를 '남북교류협력법'에서는 내국간의 거래로 간주하여 수출의 경우 반출, 수입의 경우 반입이라 명명하고 있다.

2.1.1 반입물품의 통관절차

북한에서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은 원칙적으로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장치한 후 세관에 반입신고를 한다. 반입신고란 북한으로부터 들여오는 물품을 반입하겠다는 의사표시를 세관장에게 하는 것이며 세관에서는 반입신고한 물품과 현품이 일치하는지 여부와 반입관련 제반 법규정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반입신고를 수리하고, 납세자는 반입물품을 인수한 후 15일 이내에 제세를 납부하면 된다. 특히, 북한산물품의 반입에는 관세가 면제되기 때문

에 다른 수입통관절차와는 달리 원산지증명이란 절차를 엄격히 거치므로 이 점에 유의해야 한다.

1) 반입물품의 장치

반입된 물품은 원칙적으로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장치하여야 한다. 그러나 중량이 크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보세구역에 장치하기 곤란한 물품과 검역물품이거나 압수물품등의 경우에는 타소 장치를 해당 세관에 신청하고 반입물품을 해당장소에 장치해야 한다.

2) 반입신고

당해품을 보세구역 또는 장치장소에 장치확인 후에 반입신고를 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장치확인 전에도 할 수 있다. 반입신고는 화주, 관세사, 통관법인중에서 할 수 있고 반입신고로 당해 물품의 적용법령, 과세물건, 납세의무자 등이 확정된다. 그 효력은 전송 반입신고자료가 통관시스템에 접수되어 접수결과를 신고인에게 통보할 때부터 발생한다. 또한, 반입신고시에는 아래와 같은 서류를 구비하여 신고를 하는데 북한산 물품은 무관세 혜택이 주어지는 만큼 북한산임을 증명할 수 있는 원산지 증명서 및 기타 첨부 서류 등 구비서류조건이 비교적 까다롭다. 특히 북한산 물품의 경우 그 수출경로에 따라 제출서류가 약간 상이하므로 이를 구분하여 알아본다.

- 북한에서 직접 반입한 경우 반입신고서 제출서류
 - 반입신고서(수입신고서 양식사용, 별표 1의 고무인을 반입신고서 상단 우측여백에 날인 표시하여야 함)
 - 반입승인서(제한승인품목일 경우 통일부 장관의 반입승인서)
 - 가격승인서(Invoice, 보험증서 포함)
 - 선하증권사본
 - 최근 2개월간의 선장확인 선박항해일지
 - 원산지 증명서: 3)함에 별도설명
 - 기타 검역물품인 경우 당해 검역증(식품인

경우 식품검사 합격증) 및 기타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서류

- 제3국 단순경유한 경우 반입신고시 제출서류: 대부분은 직접수입한 경우와 구비서류가 같으나 선하증권사본을 북한에서 경유국, 경유국에서 남한까지의 선하증권 일체로, 선박항해일지를 3국의 세관 등 권한있는 관공서 발행 단순경유증명서로 대체한다.

3) 원산지 증명

원산지 증명서란 해당 물품이 당해국 물품(원산지 증명서)이거나 동과물품(재수출원산지 증명서) 또는 당해국에서는 가공만 거쳤음(가공원산지 증명서)을 증명하기 위하여 당해국의 상공회의소 또는 세관 등 권한있는 발급기관에서 발행한 증명서를 말한다. 북한에서는 수출 물품이 당해국산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원산지 증명서라 하지 않고 '산지증명서'라 부른다.

〈산지증명서의 기재내용 및 인정기준〉

원산지 증명서는 발급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급하고 발송인, 수화인, 발행번호, 발행일자, 당해물품의 품명, 수량, 중량, 수출수단, 산지, 수출대상국 등이 기재된 국제협약 또는 국제관례에 맞게 작성된 원본이어야 한다. 또한 원산지 증명서상의 발송인, 수화인 등은 반입승인서상의 송화인과 일치해야 하며 당해 물품수량 및 중량이 반입승인서상의 수량 이내이어야 한다.

〈원산지 증명서 발급기관〉

원산지 증명서는 '조선대외상품검사위원회' 또는 '조선무역은행' 등 북한에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급한 것이어야 한다. 조선무역은행의 경우는 조선중앙은행 산하 은행으로서 금과 은 등 귀금속에 한해 극히 제한적으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 조선대외상품검사위원회 산하 원산, 홍남, 평양, 남포, 송림, 청진, 해주, 송악산 등 주요시 산하의 상품검사소에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고 있다.

〈원산지 판정기준〉

북한산 반입물품에 대한 별도 원산지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일반적인 원산지 판정기준을 원용하고 있다. 참고로 제3국 무역회사가 수입하여 보유하고 있던 북한물품을 한국업체가 수입하는 경우 남북교역으로 간주되지 않아 북한산으로 판명받지 않음에 유의해야 한다.

〈원산지증명서 제출면제〉

다음 각호에 해당될 경우 원산지 증명을 면제받는다.

- 과세가액이 10만원 이하인 물품
- 개인에게 무상송부된 탁송품 및 북한에서 남한으로 들어오는 자의 휴대품·별송품으로 세관장이 고려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 재반출 조건부 일시 반입물품
- 물품의 종류, 성질, 형상, 상표, 생산국명, 제조자 등에 의하여 원산지가 인정되는 물품

4) 반입심사

반입신고시 제출서류 구비여부, 세 번의 정확 여부, 분석의뢰의 필요성 여부 등을 고려하여 반입심사를 한다. 특히 북한산 물품의 경우 원산지 증명서가 인정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반입심사시에 문제가 되어왔으나 원산지증명서 반입통관시 원본 징수원칙 완화,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원산지 증명서의 경우 특이한 점이 없을 경우 수기작성 및 경미한 오자 탈자가 있더라도 인정등 원산지 인정범위완화로 이러한 문제들이 개선되었다. 심사와 관련하여 심사사항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보완요구서가 발부되어 통관이 보류되며 지정한 기간내에 보완에 응하지 않을 경우 반입신고가 각하된다.

5) 반입물품검사

반입물품에 대한 검사는 반입물품의 규격과 수량을 확인하여 그 물품의 HS 번호를 확인하고 세율을 결정하고 밀수품이 수입되는 것을 막는데 일반적 목적이 있다. 검사대상, 검사시기, 검사범위, 검사방법은 수입통관 사무처리 규정을 준용하는데 북한산 물품의 경우 비관세 저

리됨에 따라 반입물품의 원산지 확인을 위해 반입물품검사를 원칙적으로 전량검사로 하고 있다.

6) 반입신고수리

물품을 반입업자가 인수하고 내국물품화 된다.

7) 제세납부

원칙적으로 신고납부제이며 납세자는 반입물품을 인수한지 1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북한에서 남한으로 직운송(제3국 단순경유 포함)된 반입물품중 원산지가 북한인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납부하지 않는다. 따라서 북한으로부터 남한으로 직운송된 물품이라 하더라도 원산지가 북한이 아닌 물품은 관세부과의 대상이 된다. 단, 북한에서 반입되는 물품이더라도 관세를 면한다는 것이지 특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및 교통세 등 내국세를 면제하는 비과세는 아니라는 점에서 해당 내국세는 반입통관시 세관장에게 납부해야 한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등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경우 과세표준에 사용되는 물품의 가격 결정방법은 관세평가시 행세칙 등의 규정을 준용한다. 단, 구상무역방식으로 반입하는 물품은 그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을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어 판매자와 구매자간에 '실제 지불된 가격'을 과세표준가격으로 한다.

2.1.2 반출물품의 통관절차

반출통관절차라함은 반출하고자 하는 물품에 대해 세관에 반출신고를 하고 필요한 검사 및 심사를 거쳐 수출신고수리를 받아 물품을 선박 또는 비행기에 적재하기까지의 절차를 말한다. 특히 반출시 전락물자에 해당되는 경우와 관세 등의 환급절차에 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를 중심으로 반출물품의 통관절차를 살펴본다.

1) 반출물품의 장치

반출물품은 원칙적으로 보세구역에 장치하나 타소에 장치를 할 경우 해당 세관에 신청하여 허가를 득한 후 타소에 장치를 할 수 있다.

2) 반출신고

당해품을 보세구역 또는 타소장치에 장치확인 후에 반출신고를 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장치확인 전에도 할 수 있다. 반출신고는 화주, 관세사, 완제품 공급자 등이 할 수 있으나 대부분 관세사에게 위탁하여 반출신고는 원칙적으로 EDI(전자서류교환방법)에 의해 진행되고 있어 별도의 구비서류가 필요없다. 전락물자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반출신고서 (수출신고서 양식사용, 별표의 고무인을 반출신고서 상단 우측여백에 날인 표시해야함) 및 증빙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한다.

별표)

남북한 교역대상물포임
<가로 6cm × 세로 1.5cm>

3) 반출물품의 검사

반출물품의 검사는 원칙적으로 생략하나 다만 현품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세관장 확인 대상 물품이나 전락물자 등의 경우 현품검사를 할 수 있다. 특히 '남북교역물품 통관규정'에서 북한으로 반출하는 물품중 전락물자수출입공고의 전락물자에 해당하는 물품 및 이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전락물자 수출입통관 요령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해 중점심사하고 물품검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전락물자의 부정유출 가능성에 중점을 두어 물품검사를 실시한다.

4) 반출신고수리

세관장은 전송받은 신고자료에 대하여 그 내용이 반출신고서 작성요령에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한 후 신고를 수리한다. 다만 3)의 현품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출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받아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를 수리한다.

5) 반출신고필증 교부

6) 관세 등 환급

관세환급이란 수출물품 생산에 소요된 원재료의 수입시에 납부한 관세 등을 수출자에게 되돌려 주는 것을 말하는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0조 4항에 의하여 북한으로 물품 반출은 '수출용 원자재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규정 수출 등에 해당되어 관세 등 환급 특별법을 받는다. 그러나 아래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관세 등의 환급을 받지 않는다.

첫째, 대북한 위탁가공 반출물품에 대해서는 관세 등을 환급받지 않는다. 단, 대북한 위탁가공물품중 북한으로 반출후 북한에서 제3국으로 재수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둘째, '수출용 원자재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별법'상의 해당조건인 반출자 또는 위탁자(완제품 공급자)가 수입품을 반출용 원재료로 사용하고, 외국으로부터 수입시 관세 등을 납부하고,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일정한 기간내에 반출 등에 제공된 때에 한해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이들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에도 환급받을 수 없다. 관세 등 환급신고는 반출신고 수리일로부터 2년이내에 해야하며 소요 원자재 수입시 지불했던 관세, 목소세, 주세 등에 대하여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참고로, 관세 등 환급을 신청할 때 구비서류는 환급신청서, 반출신고필증 반출인정서류, 수입신고필증 납세사실 증명서류 등이 요구된다. 기타사항은 일반적인 관세 등 환급절차를 준용한다.

3. 남북교역 물품 원산지 제도

3.1 원산지제도와 교역절차

현대의 금강산 관광사업 성사 직후 주요 대기업들

은 탈파르게 대북사업팀을 재정비하고 대규모 사업 계획을 발표하고 나섰다. 북한의 본격적인 대외 개방 움직임이나 남북 당국간 정치적 관계 개선이 여전히 가시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익달려 상당의 투자안을 경쟁적으로 공표하는 것은 독점권 등 시장 선점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이 대북사업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은 반입이나 위탁가공 교역과정에서의 직접적 수익이다. 앞으로 대기업들의 대북투자가 본격화될 경우에도 투자와 교역이라는 역할분담이 적절히 이루어진다면 중소기업의 대북교역 폭 역시 보다 넓어질 수 있을 것이다. 현재까지 기업들이 북한과의 교역에서 얻는 수익성은 단순반입이든 위탁가공이든 대부분 북한산 상품의 가격경쟁력으로부터 기인한다. 북한 원산지 표시 상품의 가격경쟁력은 기본적으로 북한의 저렴한 인건비와 국내반입시 관세면제 혜택으로부터 얻어지는 것이다. 원산지제도는 후자와 관련된 것으로서, 원산지 증명서의 발급과 원산지 확인의 두 과정으로 나눌 수 있다. 실무에서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원산지 확인(인정)이다. 이는 남북교역 절차에서 마지막 수단인 통관절차에 해당되는 사항이나, 계약이전 사업구상 단계에서부터 반입물품이 북한산임을 인정받는데 문제가 없을 것인지 우선 검토해야 한다. 예를 들어 '중국산 원재료를 북한으로 들여와 가공한 후 남한으로 반입한 물품'의 관세면제 혜택 여부를 묻는 문의가 많은데, 세부사항에 따라 그 여부가 달라지므로 케이스별로 세관 등에 사전 문의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또한 북한에서 발급한 원산지 증명서에서부터, 운송 경로, 통관에 이르는 전단계에 걸쳐 세관에서 요구하는 관련 증명서류들을 세심하게 준비해야 통관과 관세면제에 문제가 없다. 관세면제란 혜택 때문에 다른 나라로부터 수입하는 물품보다 통관절차가 까다로우므로 경우에 따라 혜택보다 통관 지연 등의 피해가 더 클 수 있음을 주의하여야 한다. 남북교역 관련 원산지 제도는 주로 '남북교역물품 통관규정'에 나와 있다.

3.2 남북교역물품 통관규정의 원산지제도와 통관절차

3.2.1 남북교역물품의 통관

북한으로부터 반입된 물품은 관세법에 지정된 보세구역이나 통관장 등 장치 장소에 장치해야 하며, 북한물품을 반입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통관 사무처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면허를 받아야 한다. 수입신고는 일반수입신고서 양식을 동일하게 사용한다. 통관절차는 대부분 일반수출입 물품의 통관절차를 표준삼아 적용하나 북한산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비과세함에 따라 원산지 확인절차가 따라야 함이 일반수출입 물품의 통관 절차와 다르다. 북한산 반입물품은 원산지 확인을 위한 전량검사 후 면허처리하게 된다. 반입신고시 필요한 서류는 북한으로부터 직반입한 경우와 제3국을 단순경유한 경우가 조금씩 다르다. 먼저, 직반입한 물품의 반입신고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직반입 물품의 반입신고시 제출서류>

- 반입신고서(일반수입신고서 양식 사용)
- 반입승인서(반입승인을 요하는 178개 품목 2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 가격신고서(Invoice, 보험증서 포함)
- 선하증권사본
- 최근 2개월간의 선장확인 선박항해일지
- 원산지증명서
- 기타 검역물품인 경우 당해 검역증(식품인 경우 식품검사 합격증) 및 기타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서류

제3국을 단순경유한 북한산 물품의 경우는 직반입한 경우의 제출서류에서 선하증권사본, 선박항해일지를 다음 서류로 바꿔서 제출한다.

<제3국을 단순경유한 물품의 반입신고시 제출서류>

- 선하증권사본과 선박항해일지를 제외한 직반입 신고서의 제출서류 일체
- 북한에서 경유국, 경유국에서 남한까지의 선하증권 일체

- 제3국의 세관 등 권한 있는 관공서가 발급한 단순경유증명서

3.2.2 관세 및 내국세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가 북한인 반입물품은 관세가 부과되지 않으나, 반입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및 교통세는 반입통관시 세관장에게 납부해야 한다. 내국세 등을 부과, 징수하는 경우 과세표준에 사용되는 물품의 가격은 관세 평가 시행세칙 등의 규정을 준용하여 판매자와 구매자간에 실제 지불된 가격으로 결정한다. 북한으로부터 직운송된 물품이라도 원산지가 북한이 아닌 반입물품은 관세면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3.2.3 원산지 확인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은 북한 물품의 반입신고시 당해물품의 원산지증명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확인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세관은 북한에서 발행한 원산지 증명서 (북한에서는 산지증명서라고 부름), 상품에 표시된 원산지 표시, 선하증권 사본 등 운송서류들을 검토하여 원산지를 확인하게 된다. 해당 원산지증명서가 적법한 기관이 발급한 유효할 것 인지의 여부에 의문이 있는 경우나 증명서에 기재된 세부 사항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세관장은 증명서의 발행기관 및 관계기관에 이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다음 몇가지 경우에 한해서는 원산지증명서의 제출을 면제받는다.

<원산지증명서의 제출면제>

- 과세가격(종량세의 경우에는 이를 관세법 제9조의 규정에 준하여 산출한 가격)이 10만원 이하인 물품
- 우편물(관세법 제152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함)
- 개인에게 무상송부된 탁송품 및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및 교육세가 부

- 과되지 아니 하는 휴대품이나 발송품
- 재반출 조건부 일시반입물품
- 물품의 종류, 성질, 형상 또는 상표, 생산국명, 제조자, 등에 의하여 원산지가 인정되는 물품 원칙적으로 반입 물품이 북한으로부터 직접 남한으로 운송반입된 경우에 한하여 북한산 원산지 인정되나(원산지 확인에 있어 직접 운송 원칙), 운송상의 이유로 제3국에서 환적 또는 일시장치가 이루어진 물품
- 박람회, 전시회 기타 이에 준하는 행사에 전시하기 위하여 제3국으로 수출하였던 물품으로서 전시목적에 사용한 후 남한으로 반출된 물품에 대해서는 남한으로 직접운송된 물품으로 본다. 다만, 이와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언급했듯 경유국에서 발행한 단순경유 입증서류 등 제3국을 단순경유한 물품의 반입신고시 필요한 제출서류가 추가되어야 한다.

〈참고〉 경유국별 단순경유 입증서류

- 1) 홍콩차이나
 - 홍콩차이나 상공회의소 발행 '재수출원산지 증명서'
- 2) 일본
 - 일본 세관 발행 '적려허가통지서'
- 3) 중국
 - 내륙운송의 경우
 - '과경화물보관단(過境貨物報關單)'
 - 국외(북한)에서 출발하여 기차로 중국대륙을 통과하여 국외로 운송하는 화물
 - 항공 및 해상운송의 경우
 - '진구화물재화청단(進口貨物載貨清單)'
 - 국외(북한)에서 운송을 시작하여 중국 항공 또는 공함을 거쳐 원 수송장비로 계속 국외로 운송하는 화물에 대한 증명서
 - '외국화물전운준단(外國貨物轉運準單)'
 - 중국내 보세구역 또는 보세창고에 일시 보관후 재반출되는 경우
 - '진(출)구화물보관단(進(出)口貨物報關單)'

단, 동서류의 무역방식란에 전구무역(轉口貿易)이라는 표시를 해야함.

3.2.4 원산지증명서의 인정기준

적정한 원산지증명서로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몇가지 요건을 공통적으로 충족시켜야 한다.

첫째, 원산지증명서는 발송인, 수확인, 발행번호, 발행일자, 당해물품의 품명, 수량, 중량, 수출수단, 산지, 수출대상국 등이 기재된 것이어야 하며, 국제협약 또는 국제관례에 맞게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반입물품이 반입 승인을 요하는 품목인 경우는 원산지증명서상의 발송인과 수확인이 반입승인서상의 송확인과 일치해야 하고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반입물품의 수량과 중량은 반입승인서상의 수량 이내여야 한다. 관례에 맞는 일정한 양식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손으로 작성한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적정한 원산지증명서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

둘째, 원산지증명서는 한글 또는 영어로 표기된 것이어야 한다. 원산지증명서와 관련하여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서는 불어로 작성된 것까지 인정하고 있어 혼동의 우려가 있다.

셋째, 원산지증명서는 '조선대외상품검사위원회', '조선무역은행' 등 북한에서 원산지증명서 발급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급한 것이어야 한다.

3.2.5 원산지 표시

북한에서 반입되는 물품은 원칙적으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도 통관이 허용되며 4)원산지표시가 부착된 물품에 대하여는 부착된 상태로 통관이 가능하다. 다만, 포장물품 등에 부착 또는 인쇄된 문구 등이 다음과 같은 내용물을 담고 있을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제거해야 통관이 허용된다(관세법 제146조 참조).

〈사전에 제거를 요하는 부착물〉

- 북한 및 반국가단체와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 선전하는 내용

- 공산주의 이념이나 체제를 찬양, 선전하는 내용
-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인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내용
- 기타 국민의 안보의식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내용

북한산임을 나타내는 원산지 표시의 유무와 관계없이 통관이 허용되는 것과 별도로, 원산지 허위표시 등의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

4. 남북한 교역대상 물품 및 반출/반입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

- 개정 1990. 9. 25 통일원고시 제90-2호
- 개정 1991. 5. 6 통일원고시 제91-2호
- 개정 1994. 12. 1 통일원고시 제94-4호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 의한 남·북 한간 물품의 반출반입 승인 절차 및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교역대상물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제1조 (교역대상물품의 공고)

- ① 대외무역법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공자원부장관이 고시한 다음 각호의 공고는 이를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남·북한 교역대상물품의 공고로 본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입공고·별도공고 및 통합공고에서 수출·수입의 제한이 없는 품목은 반출·반입 자동승인품목으로, 기타의 품목은 반출·반입 제한승인품목으로 각각 본다.
-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출·입 제한승인 품목으로 본다.
 1. 미술품, 도예, 공예작품, 우표, 화폐 등 유가증권(이미 사용한 것과 통용되지 아니하는 것)의 반입
 2. 위탁가공용 설비로서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경우

- 가. 무상반출
- 나. 물물교환(Barter trade), 구상교역(Compensation trade), 대용구매(Counter purchase)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연계교역으로서, 대용물품이 반입 제한 승인품목인 경우
- 다. 1회 US\$ 100만달러 이상 또는 연간 US\$ 300만달러 이상의 반출
- 라. 설비 반출 대금의 100분의 30이상을 생산물품이나 가공비 등으로 상계하는 경우

제2조 (반출·입의 승인)

- ① 제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출·반입 제한승인품목의 반출·반입은 통일원장관이 상공 자원부장관 등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를 승인한다.
- ② 통일원장관은 제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반출·반입 자동승인품목의 반출·반입에 대하여는 법 제26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50조 제1항 및 대외무역법시행령 제10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그 승인권한을 위탁한다.

제3조 (반출·입 승인실적의 보고)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출·반입을 승인한 외국환은행의 장은 승인서상에 "남북한교역대상물품"임을 표시하여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승인결과를 3일 이내에 통일원장관 및 상공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 (기타 반출·입 승인절차)

반출·반입승인절차에 관하여 법·동법시행령 및 이 고시에 특별히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외무역관리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 북한의 외국인 관련 투자법규집, 통일원, 1997>

5. 품목별 반출입 요령

5.1 농림축산물

농림축산물은 남북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6~7%(반입금액기준) 수준으로 많은 편은 아니지만, 무관세인 북한산 농산물의 대량반입이 국내시장질서와 생산농가보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여 제한적으로 반입이 승인되고 있다. 반입승인 여부는 국내 수급상황, 반입가격, 북한의 생산투명성 등 여러 측면을 검토하여 결정되므로 사전에 반입가능성 여부를 충분히 검토한 후 반입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국영무역 대상품목

국민의 식생활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곡물로서 수급안정이 요구되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농수산물 유통공사에서 이를 관리하고 있다. 감자, 양파, 마늘, 고추, 생강, 녹두, 팥, 기타 서류, 녹차, 메밀, 땅콩, 참기름 및 그 분획물 등 대부분의 농산물이 이에 해당된다. 이들 주요 농산물의 반입 승인을 받는 경우에도 제반 수수료를 포함한 반입 원가로 농수산물 유통공사에 인도하여야 하며 반입자의 임의판매가 제한된다.

반입승인시 북한과의 직접계약, 제3국을 경유하지 않는 직접수송원칙 등이 엄격히 적용되며 국내 수급동향, 농수산물 유통공사와의 인도조건 합의 가능성 등도 고려 대상이다. 특히, 북한에서의 생산이 지역적으로 부적합한 작물은 중개인을 통해 제3국으로부터 위장반입될 가능성이 크므로 원산지 확인에 유의하여야 한다.

■ 당면, 호두

당면·호두는 원산지 위장 반입, 국내 생산자 보호 등을 위해 '95년 반입승인을 요하는 품목으로 지정하고, 별도의 반입대책에 따라 연간 반입 승인 물량 및 승인기준을 정하여 반입을 허용하고 있는 품목이다. 반입승인시 반입가격, 직접계약, 제3국을 경유하지 않는 직접수송원칙 등이 엄격히 적용되며, 반입승인을 받은 물량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반입신청자격이 제한되는 등 여러 가지 조건이 부과되고 있다.

당면은 북한도착도방식의 전분공급계약서와 북한의 당면공장에서 생산되었음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제시되어야 하며, 호두는 식물방역협상 수일금지지역인 제3국산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위장 반입여부를 엄격히 심사하고 있다.

■ 축산물

축산물 반입시에는 국내 검역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축산물은 북한의 검역관련 자료를 1차 서류 심사하고 우리측 검역관이 현장을 방문조사후 기준에 부합되어야만 반입이 가능하므로 사전에 검역 관련자료의 제공 및 우리측 검역관의 방문가능 여부를 북한측에 타진하여야 한다. 북한산 반입승인은 상기 검역관련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 국내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한적으로 결정된다.

5.2 한약재

북한산 한약재는 남한과 기후풍토가 같고 비교적 깨끗한 자연환경에서 재배·채취되므로 중국산에 대한 수입대체효과가 높은 교역 유망품목 중의 하나이다.

〈반입승인을 요하는 품목〉

한약재 중 반입승인을 요하는 품목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의 반입(수입)요건 확인후 통일부장관의 반입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① 원료의약품용으로 반입하는 품목중 요건확인대상 한약재
- ② 고율관세품목: 건강, 의이인, 산약 등
- ③ CITES 품목: 사향, 용담 등
- ④ 수급조절대상품목
- ⑤ 기타: 건사, 해구신 등

〈수급조절 대상품목〉

수급조절 대상품목은 반입한도량이 정해진 품목과 정해지지 않은 품목으로 구분되며 반입절차도 각기 다르다.

반입한도량이 정해진 수급조절 대상품목은 백출, 목단, 지황, 시호, 오미자이며 반입한도량이 정해

진 품목은 한약재 수급조절 위원회에서 해당품목에 대해 연간 반입한도량을 책정하고,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에서 반입요령을 공고하며, 공고된 절차에 의해 반입업체가 선정(입찰방식)되고 있다. 선정된 업체는 직교역 요건을 구비하여 통일부장관의 반입승인을 받아야 한다.

반입한도량이 정해지지 않는 수급조절 대상 품목은 강활, 구기자, 당귀, 목활, 두충, 백문동, 목단, 방풍, 백작약, 백지, (백)하수오, 산수유, 적작약, (적)하수오, 천궁, 치자, 택사, 향부자, 황금, 황기이며 반입한도량이 정해지지 않은 품목은 한약재 수급조절 위원회에서 수급상황에 따라 물량을 배정하여 반입업체가 결정되면 통일부장관의 반입승인을 받아 반입할 수 있다.

5.3 수산물

수산물은 남북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편은 아니나 최근 반입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품목이다. 수산물의 경우도 다른 품목과 마찬가지로 반입승인을 요하는 품목과 포괄승인품목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북한산 수산물에 대한 반입제한은 꾸준히 완화되고 있다. 반입승인을 요하는 수산물은 통일부고시로 정하고 있는 8개품목과 수출입공고 등에서 수입에 제한을 두고 있는 품목으로 구분된다.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8개품목은 생산어민보호 등을 위해 북한산 반입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사실상 교역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품목이며, 수출입공고 등에 제한을 두고 있는 품목은 제한요건을 충족시킬 경우 반입승인이 가능한 품목이다.

수산물 교역에서 특히 주의할 점은 품질관리와 제품 규격화문제 등으로 북한은 냉동시설부족, 조업여건 불비 등으로 인해 수산물의 선도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상품가치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인해 품질 규격화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수산물 교역시에는 세세한 부분까지 명확한 작업지시를 하여야 하며, 중개인 등을 통해 세밀한 품질확인 절차를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 수산물 교역은 제3국적 입자선박을 이용한 직수송방식의 교역형태가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방식을 이용할 경우 여러 가지 유리한 면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수산물 반입승인을 요하는 품목(8품목)은 미꾸라지(활어), 홍어(냉동), 새우와 보리새우(염장·염수장), 가리비(냉동), 오징어(냉동), 낙지(냉동), 꽃게(신선), 꽃게(냉동)이다.

출처: 1. 북한 경공업 발전 실행계획을 위한 주요 프로젝트의 검토보고서, 한국개발연구원, 1996
 2. 콜터 북한경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000
 3. 대북경제정보 심층기획조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000
 4. KOTRA 북한경제정보 홈페이지(www.kotra.or.kr), 2000
 5. 현대경제연구원 북한정보뱅크(www.hri.co.kr), 2000